

심 사 보 고 서

2018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8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93
----------	-----

2017. 10. 24(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7년 9월 29일

다. 회부일자 : 2017년 9월 29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10월 13일

-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오진섭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현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규모(회의실, 사무실, 주차장 등) 협소로 노동
단체 불만 및 확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협소한 복지관 진입로
및 교통불편(접근성)을 해소하고 노동계의 권익·편익 증진, 미래 확장
가능성을 감안하여 신축하려는 것이고,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제2차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곤충산업의 기반과 활성화 구축을 위해 중요한 곤충종자보급센터를 공모사업을 통해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유치 확정(2017.5.22.)되어 농업기술원 부지 내에 보급센터를 증축하여 향후 충북이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곤충산업을 선점하는데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며,
- 토종 민물고기 종자 대량 생산·보급으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및 내수면산업 양식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현대화된 첨단양식 시설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고, 이를 위해 내수면산업연구소에서 해양수산부의 친환경양식 어업육성사업분야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최종 확정(17.1.20.)되어 국비 10억원을 확보하고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부지 내에 토종어류 종자생산연구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이고,
- 삼성면 지역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써 고속도로와의 접근성 등 입지 조건이 우수하여 산업단지와 기업체 입주가 급증하고 있으며, 공장 화재 및 구조·구급 등 소방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현 지역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 임.

나.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 및 신축》

-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산12
- 사업기간 : 2018. ~ 2019.
- 규 모 : 부지 3,636㎡, 건축 연면적 2,314㎡(지하1층, 지상4층)
- 사 업 비 : 7,709백만원(부지1,350백만원, 건축비 6,359백만원)

《곤충종자보급센터 증축》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 46(농업기술원 내)
- 사업기간 : 2017. 9. ~ 2019. 12.
- 증축규모 : 2,000m²(지상 3층)
- 사 업 비 : 5,000백만원(국비50%, 도비50%)

《토종어류 종자생산 연구시설 신축》

- 위 치 :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79-3번지
- 사업기간 : 2017. 9. ~ 2018. 12.
- 신축규모 : 960m²(지상1층, 1동)
- 사 업 비 : 2,0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음성소방서 삼성119안전센터 신축》

- 위 치 :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718-1번지 외 7필지
- 사업기간 : 2018년
- 부지면적 : 4,809m² / 음성군 소유 부지 무상사용
- 신축규모 : 1,000m²(지상 2층)
- 사 업 비 : 2,320,671천원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호)

-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하나인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 및 신축은 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진입로가 협소하여 버스 등의 통행이 불가능하며, 시설규모도 협소하여 입주하지 못한 노동단체가 발생하는 등 노동단체의 불만이 팽배해 있고 근로자의 최소한의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이전·신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 곤충종자보급센터 증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제2차 곤충사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이 공모신청을 통하여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유치(2017.5.22.)하여 농업기술원 부지 내에 보급센터를 증축하는 것으로 향후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곤충산업을 충북이 보다 선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이 없음.
- 토종어류 종자생산 연구시설 신축은 내수면산업연구소에서 해양수산부의 친환경양식 어업육성사업분야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17.1.20.)되어 국비 10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부지 내에 토종어류 종자생산연구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음.
- 음성소방서 삼성119안전센터 신축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써 고속도로와의 접근성 등 입지조건이 우수하여 산업단지와 기업체 입주 that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장화재 및 구조·구급 등 소방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현 지역대의 골든타임 확보를 통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19안전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재산의 취득

-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 및 신축 : 가결
- 곤충종자보급센터 증축 : 가결
- 토종어류 종자생산 연구시설 신축 : 부결
- 음성소방서 삼성119안전센터 신축 : 가결

□ 부결의 사유

- 토종어류 종자생산 연구시설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이전에 관련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 절차적 미비와
- 내수면연구소가 충주시와 옥천군에 이미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시설을 괴산군에 추가로 설치하여 분산배치하는 것보다는 기존 시설에 집중배치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승인하지 않기로 함.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18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 693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회)

2018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7년 9월 29일

2018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 693 호

제출연월일 : 2017년 9월2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현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규모(회의실, 사무실, 주차장 등) 협소로 노동단체 불만 및 확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협소한 복지관 진입로 및 교통불편(접근성)을 해소하고 노동계의 권익·편익 증진, 미래 확장 가능성을 감안하여 신축하려는 것이고,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제2차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곤충산업의 기반과 활성화 구축을 위해 중요한 곤충종자보급센터를 공모사업을 통해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서 유치 확정(2017.5.22.)되어 농업기술원 부지 내에 보급센터를 증축하여 향후 충북이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곤충산업을 선점하는데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며,
- 토종 민물고기 종자 대량 생산·보급으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및 내수면산업 양식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현대화된 침단양식 시설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고, 이를 위해 내수면산업연구소에서 해양수산부의 친환경양식 어업육성사업분야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최종 확정('17.1.20.)되어 국비 10억원을 확보하고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부지 내에 토종어류 종자생산연구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이고,
- 삼성면 지역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써 고속도로와의 접근성 등 입지조건이 우수하여 산업단지와 기업체 입주가 급증하고 있으며, 공장 화재 및 구조·구급 등 소방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현 지역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 및 신축》

-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산12
- 사업기간 : 2018. ~ 2019.
- 규 모 : 부지 3,636㎡, 건축 연면적 2,314㎡(지하1층, 지상4층)
- 사 업 비 : 7,709백만원(부지1,350백만원, 건축비 6,359백만원)

《곤충종자보급센터 증축》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 46(농업기술원 내)
- 사업기간 : 2017. 9. ~ 2019. 12.
- 증축규모 : 2,000㎡(지상 3층)
- 사 업 비 : 5,000백만원(국비50%, 도비50%)

《토종어류 종자생산 연구시설 신축》

- 위 치 :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79-3번지
- 사업기간 : 2017. 9. ~ 2018. 12.
- 신축규모 : 960㎡(지상1층, 1동)
- 사 업 비 : 2,0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음성소방서 삼성119안전센터 신축》

- 위 치 :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718-1번지 외 7필지
- 사업기간 : 2018년
- 부지면적 : 4,809㎡ / 음성군 소유 부지 무상사용
- 신축규모 : 1,000㎡(지상 2층)
- 사 업 비 : 2,320,671천원

3.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공유재산관리계획

2018년도 관리계획총괄표(14-1)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m², 천원)

[illegible]

201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1건	3,636	1,350,000				
	건물	4건	6,274	15,679,671				
	기타							
1	토지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산12	3,636	1,350,000	2018	충청북도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건물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산12	2,314	6,359,000	2019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	
	기타							
2	토지							
	건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 46 (농업기술원 내)	2,000	5,000,000	2019	곤충종자보급센터	증축	
	기타							
3	토지							
	건물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79-3	960	2,000,000	2018	토종어류 종자생산 연구시설	신축	
	기타							
4	토지							
	건물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718-1번지 외 7필지	1,000	2,320,671	2018	음성소방서 삼성119안전센터	신축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관 계 법 령 발 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